

재질·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
제10조(재질·구조 개선지침 등) ①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·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.

제37조(보고와 검사 등) ①환경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(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·전자제품 제조·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·수입업자에 한정한다) 또는 국토교통부장관(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)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·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3조(보고와 검사 등)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

별표8. 과태료의 부과기준 - 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이상위반
고.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·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45조제5항 제7호			
1) 고의로 보고·제출하지 않은 경우		50	80	100
2)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·제출하지 아니한 경우		30	50	80
3) 그 밖의 경우		20	30	50
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.
2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·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